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3.
제 출 자 : 경기도지사

□ 제정이유

○ 경기도에서는 3회에 걸쳐 세계도자 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우리 도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위상을 제고하였으나 도자시장의 현 실태는 대부분의 요장이 영세하고 도자강국들과 경쟁하기에는 기술이나 도자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정책적·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도자산업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.

○ 따라서 전국 도예업체의 54%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가 주도하여 연구개발지원과 인프라의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도자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.(안 제3조)

나. 도자문화산업의 중·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전통도예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 및 제5조)

다.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실시 및 도예교실 운영과 지원, 기술개발, 도자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
라. 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.(안 제10조)

마.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위임·위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)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예촌”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・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도자특구”라 함은「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」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3. “도자클러스터”라 함은 도자업체, 도자관련 대학・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, 기술훈련,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・연구 사업의 지원, 도예전문인력의 양성,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,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・장기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디자인・소지・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
3.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
4.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
5. 도예교육・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
6. 그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・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5조(전통도예 전문인력 양성) ①도지사는 우리나라 전통도예의 맥을 계승하고 이를

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도예의 전승·보전·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과 경기도 도자관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기·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도자교육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은 시·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.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소요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) ①도지사는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내에 시설·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기술개발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예공방에 연구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도자클러스터 조성 등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·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,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, 문화상품의 생산·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(도자특구·도예촌을 포함한다)를 육성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·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

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) 도지사는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·장비·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 중 수정동의안

제출연월일 : 2006. 3. 10
제 출 자 : 이경영 위원

1. 수정이유

가. 도자교육 대상을 “관내 초등학교 학생”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“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・중・고등학교 학생”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6조 제1항 중 “관내 초등학교 학생”을 “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・중・고등학교 학생”으로 한다.

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 중 수정안

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관내 초등학교 학생”을 “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・중・고등학교 학생”으로 한다.

수정 조례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	수정사유
제6조(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도자교육) ----------관내 초등학교 학생 ----------.	제6조(학생에 대한 도자교육) ----------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・중・고등학교 학생----------.	o “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・중・고등학교 학생”으로 수정

【수정안 포함】

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예촌”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・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도자특구”라 함은 「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」 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3. “도자클러스터”라 함은 도자업체, 도자관련 대학・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, 기술훈련,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・연구 사업의 지원, 도예전문인력의 양성,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,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・장기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디자인・소지・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
3.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
4.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
5. 도예교육・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
6. 그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・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5조(전통도예 전문인력 양성) ①도지사는 우리나라 전통도예의 맥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도예의 전승·보전·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과 경기도 도자관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기·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학생에 대한 도자교육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은 시·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.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소요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) ①도지사는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내에 시설·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기술개발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예공방에 연구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도자클러스터 조성 등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·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,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, 문화상품의 생산·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(도자특구·도예촌을 포함한다)를 육성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

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·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) 도지사는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·장비·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【당초 제정안】

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예촌”이라 함은 도자기 생산・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.
2. “도자특구”라 함은 「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」 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3. “도자클러스터”라 함은 도자업체, 도자관련 대학・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, 기술훈련,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・연구 사업의 지원, 도예전문인력의 양성,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,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・장기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디자인・소지・유약 등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
3.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
4. 우수 도자중소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
5. 도예교육・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
6. 그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・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5조(전통도예 전문인력 양성) ①도지사는 우리나라 전통도예의 맥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도예의 전승·보전·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과 경기도 도자관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기·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도자교육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은 시·군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.

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) ①도지사는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내에 시설·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기술개발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9조가 규정하는 도자클러스터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예공방에 연구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도자클러스터 조성 등) ①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·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,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, 문화상품의 생산·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도자클러스터(도자특구·도예촌을 포함한다)를 육성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예촌 또는 도자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

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·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) 도지사는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·장비·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「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